

식품 제조·판매업체 ‘안전소비형 푸드QR’ 도입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처에서는 소비기한이 포함된 푸드QR(이하 ‘안전소비형 푸드QR’)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적용 업체(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상기 입법예고 사항이 최종 개정된 것은 아니나, 포장지 교체에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소비형 푸드QR’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인쇄기·검증기 도입 검토 및 시스템 연동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인쇄기·검증기 도입 등 초기 비용 부담이나 현장 여건 상 ‘안전소비형 푸드QR’ 도입이 어려운 업체에서는 포장지에 QR코드 하나만 추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량인쇄형 푸드QR’을 도입을 권고드립니다.

* 대량소비형 푸드QR은 행정처분 경감 대상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푸드QR」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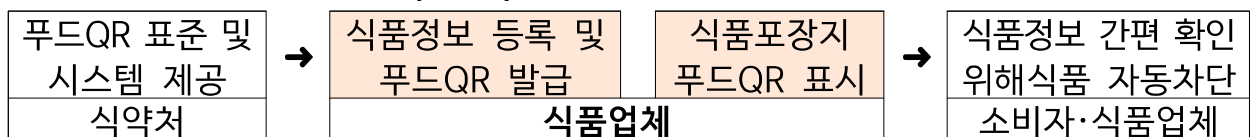
- 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표시하여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조·유통업체는 생산·이력 관리에 활용하는 QR 기반 디지털 정보 제공 서비스

* (정부 제공) 업체·제품 정보, 인증, 회수 등 / (업체 제공) 표시, 영양성분, 조리법 등

□ 참여 방법

※ 붙임1 참조

- 식약처 푸드QR 포털에 자사 제품 정보를 등록한 후 QR을 발급하여 포장지에 표시(인쇄)



□ 제도적 지원

※ 붙임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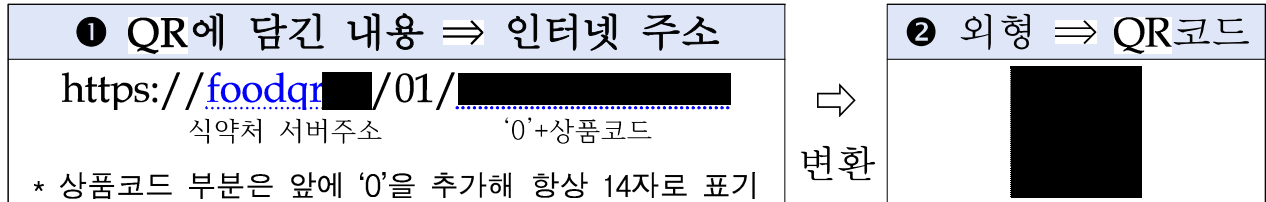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28호)

- 소비기한 포함된 푸드QR 표시 제조업체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 판매업체에 행정처분 경감 추진

* (제조) 푸드QR 표시 제품이 위반한 경우 1차 행정처분 → 1/2 범위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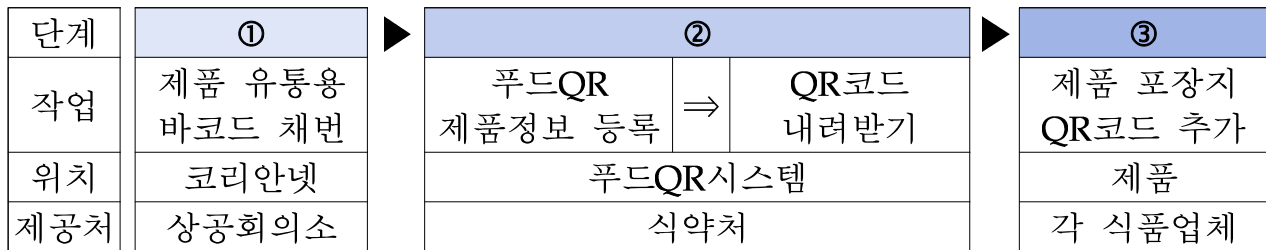
* (판매) 푸드QR 표시 제품이 판매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경우
1차 영업정지(기타식품판매업)·과태료(자유업) → 시정명령·경고

□ 푸드QR 형태



- ① 서버주소와 제품 식별(포장·판매 단위)을 위한 상품식별코드*(13자)는 필수 고정된 값으로 1)인터넷 주소 형식으로 구성
* 포장지에 상품 구분, 가격 계산을 위해 표시하는 바코드(GTIN-8, 12, 13)
- ② 휴대폰 카메라 또는 스캐너 자동 인식을 위해 QR코드로 변환

□ 푸드QR 도입 절차



- ① **현재와 동일** 유통 시 제품 구별과 가격 계산을 위해 상공회의소 코리안넷*에 접속하여 유통^{포장} 단위별로 상품식별코드**를 생성
* (주소) [] // 13자 형태 숫자코드(국내 880~ 또는 881~)

유통 제품에 대한 상품식별코드를 이미 표시하고 있다면 ① 단계는 생략합니다.

- ② 식약처 푸드QR 포털*에 회원가입·접속하여 유통 제품별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후 푸드QR 코드 이미지를 내려받음
* (주소) portal.foodqr.kr → 좌측 상단 '산업체용' 메뉴

회원가입 및 제품 등록 방법은 「푸드QR 사용자 안내서(식품업체용)」을 참고하세요.
(위치) portal.foodqr.kr → 산업체용 메뉴(좌측 상단) → 알림마당(상단) → 자료실

- ③ 포장지 디자인(인쇄 동판)에 푸드QR 이미지를 추가하여 제작
* 포장지 QR코드 높이·너비는 각 12mm(1.2cm) 이상으로 인쇄

1) (GS1-디지털링크) 전 세계 바코드 표준을 정하는 민간표준기구인 GS1(Global Standard No.1)에서 2018년에 발표한 차세대 바코드 표준 기술로 바코드 정보를 인터넷 주소에 배치하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

□ 소비기한 포함된 푸드QR 도입 업체(제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소비기한이 포함된 푸드QR을 표시하여 제조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자동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처분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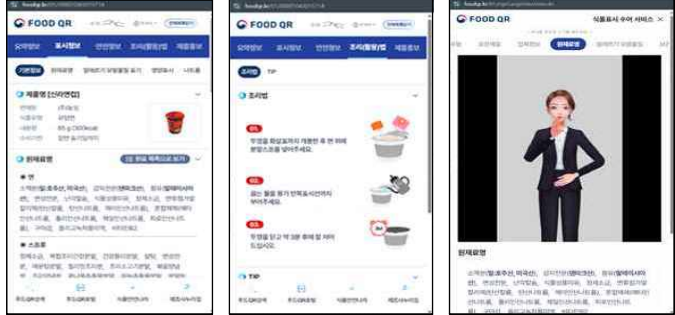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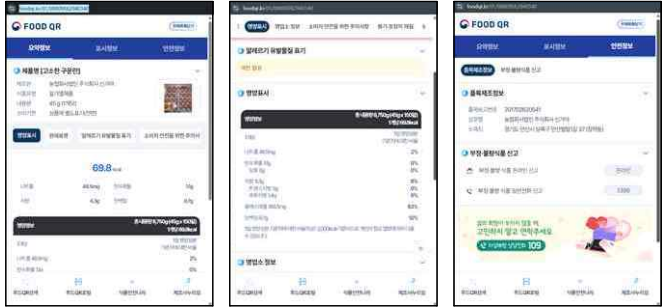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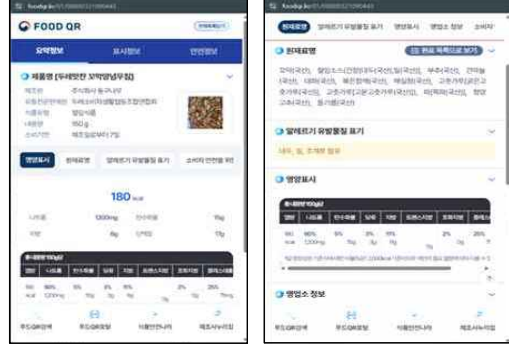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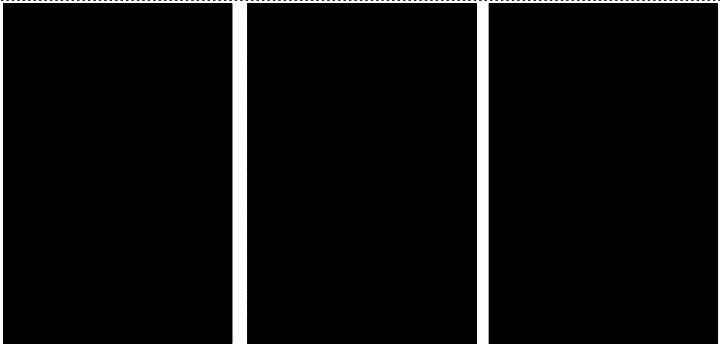
적용 대상 영업	주요 개선내용
식품제조· 가공업	•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에 이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을 1/2 범위 경감
기타 식품 판매업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로서, 국제 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영업정지 처분(7일)을 시정명령으로 처분
영업이 없는 식품 판매점 (편의점 등)	• 소비기한 경과 식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중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과태료(30만 원)를 경고로 처분

※ 최종 개정되는 내용은 추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푸드QR 표시 적용 시 장점**

- 제한된 표시 면적에 담기 어려운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가능
 - 조리법(표준 템플릿), 음성·점자 변환, 수어영상제공(등록 시) 가능
- 제품 회수·안전 정보 등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업체 위기대응 역량 향상
- 디지털 식품 정보 제공 환경 및 글로벌 유통 환경 변화에 선도적 대응 가능
 - ▲제품 가격계산 ▲식품이력추적 ▲수어영상 링크 등 글로벌 표준 푸드 QR로 다양한 목적과 정보를 수용
 - * (관련정보) <https://www.gs1kr.org/front/board/appl/GS1DigitalLink.asp>
 - ** (GS1 Sunrise 2027) 현행 1·2차원 바코드는 향후 ‘GS1-디지털링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음
- 별도 서버 구축 등 비용* 없이 국가 통합 플랫폼 무료 이용
 - * 서버구입, 프로그램 개발, 통신망 임차, 관리 인건비 등 약 연 3천만 원 이상 소요
- 조리법·브랜드 홍보 등 마케팅 활용성 제고
 - 조리 이미지 및 영상 링크, 음성·수어 영상 링크, 차별화된 디지털 콘텐츠 홍보 가능
 - * ▲알레르기 원료 확인 ▲영양성분 장점(나트륨,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등) ▲첨가물 무첨가 ▲ 무설탕 등 기호 선택(다이어트, 환자용 식품 등) 앱 등 개발 가능
- 수출국가용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소비자에게도 효율적 정보 제공 가능
 - 영업자가 외국어 정보를 별도 등록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언어 설정을 변경하면 번역된 정보 확인 가능
- 식품 제조·유통관리 및 이력추적관리 자동화 (안전소비형·이력추적형인 경우)
 - 제조·유통 단계에서 푸드QR을 스캔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자동 등록하고 소비자는 확인
 - * 생산품 고유번호 인쇄 → 제조·출하 공정 자동화

다음 푸드QR 표시 사례는 푸드QR 포털(portal.foodq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업체명)	푸드QR 유형	포장지 표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접속)
신라면컵 (농심) 	대량인쇄형 	https://foodqr.kr/01/08801043015714 
고소한 구운란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신가야) 	대량인쇄형 	https://foodqr.kr/01/08809562940340 
두레맛찬 꼬막양념무침 (주식회사 동구나무) 	안전소비형  (소비기한: 260315)	https://foodqr.kr/01/08800321090443?17=260315 
추부깻잎 (만인산농협) 	농산물 생산자구분형 	https://foodqr.kr/01/08801448266445?93=001 

□ 표시대상 구분

제품 포장지 표시대상	푸드QR 제공 가능 표시 대상
■ 제품명 ■ 내용량 ■ 영업소 명칭 ■ 소비기한 등 날짜표시 ■ 보관방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질소가스충전 표시 제외) ■ 원재료명(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 영양성분(4종: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 영업소 소재지 ■ 품목보고번호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질소가스충전) ■ 원재료명(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제외) ■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제외) ■ 식품유형 ■ 용기·포장 재질 * 생략한 표시사항을 포함한 의무표시사항 모두 푸드QR로 정보 제공

□ 글씨크기 확대

	현행	개선	예외
글씨 크기	10pt 이상	12pt 이상	단, 식품 용기·포장의 형태, 크기의 다양성 및 품목별 의 무표시사항의 차이로 인해
장평	90% 이상 (면적100cm ² 이하 50%이상)	90% 이상 (축소 미인정)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품목만 예외 규정

※ 12포인트 이상 글씨크기 표시 예외 대상 면적별 글씨크기

식품 및 축산물	(1) 정보표시면적 50cm ² 이상~100cm ² 미만 : 7포인트 이상 (2) 정보표시면적 50cm ² 미만 : 6포인트 이상 (3) 유리병 형태의 소주, 맥주 제품 : 10포인트 이상
건강기능식품	(1) 정보표시면적 100cm ² 이상~200cm ² 미만 : 10포인트 이상 (2) 정보표시면적 50cm ² 이상~100cm ² 미만 : 7포인트 이상 (3) 50cm ² 미만 : 6포인트 이상

□ 개정사항 적용 표시 도안(예시)

○ 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

제 품 명	○○○ ○○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영 업 소 (장) 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식품, ○○시 ○○구 ○○로 ○○길 ○○
소비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냉장보관
용기(포장)재질	○○○○○
품목보고번호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푸드QR 적용

제 품 명	○○○ ○○
영업소 명칭	○○식품
소비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감미료 ○○*, ○○○*, ○○* 함유(*알레르기 유발물질)
세부 표시정보는 여기를 스캔하세요	
보관방법	냉장보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영양성분 표시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푸드QR 적용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당류 00g		00%
트랜스지방 00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 푸드QR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푸드QR가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만, 세계적 디지털 정보 제공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 디지털 표시 준비에는 전산·관리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어 중소 업체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서 푸드QR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 (접속주소) portal.foodqkr.kr

질문 2

- 푸드QR을 도입하면 제조업체에 어떤 직접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비용만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제품 브랜드 신뢰도 향상, 제품 관리 효율성 개선, 일부 표시를 QR코드로 제공하는 경우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포장지 크기가 작은 제품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며, 수출 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이 개정되면 ‘안전소비형’ 푸드QR을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일부 행정처분을 경감 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3

- QR코드를 추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답변 포장지에 QR 그림만 추가하는 대량인쇄형 푸드QR을 도입하면 QR 디자인만 추가하면 되므로 비용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 표시 변경, 홍보 등으로 식품업체에서 포장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푸드QR을 추가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소비기한이 포함된 ‘안전소비형’*과 ‘이력추적형**’ 푸드QR을 표시하는 경우 산업용 인쇄기·인식기 도입, 고속 제조 시 제조 라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POS 계산 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자동 차단 지원(롯데백화점 동탄·인천점)

** 풀무원 두부의 QR처럼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이력정보 간편 확인

질문 4

- 안전소비형 푸드QR을 활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차단에 활용하고 있는 판매업체 사례가 있나요?

답변 롯데백화점(인천점, 동탄점) 및 일부 편의점(세븐일레븐)에서는 안전소비형 푸드QR을 활용하여 계산대 POS기 또는 셀프계산대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판매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푸드QR 적용에 관심있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답변 푸드QR 누리집(portal.foodqkr.kr)에 등록 제품 현황, 푸드QR 사용자 안내서, 식품업체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개소, 1,890개 제품(26.7.14.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품별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을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운영기관) 푸드QR 도우터(1551-9296)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